

디엘이앤씨 압수수색, 일제 감독에 대한 사법조치 등 진행 중

- 8.29.(화) 디엘이앤씨 본사 및 부산 사고 현장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실시
- 전국 시공현장 감독 79개 현장감독 실시, 61개 현장에서 위법행위 209건 적발

'23.8.29.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8월 11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(청장 양성필)에서 09:00경부터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*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.

* 수급인 케이씨씨 본사 및 현장사무실 포함

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하여,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에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.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,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.

한편, 고용노동부는 지난 7.11.~8.4. 약 4주간* 디엘이앤씨('23 시공능력평가순위 6위)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고,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.

*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(7.4) 후 즉시 전국 현장 감독 실시

▲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,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하여 시정을 명하고,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며, ▲61개 현장(위 5개 포함)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,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, 과태료 약 3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.

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하고,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
담당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연 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이영지 (044-202-8953) 권중화 (044-202-8960)
담당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	책임자	과장직무대리	유종호 (044-202-8936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수 (044-202-8937)

1 디엘이앤씨 시공현장 주요 감독결과(7.11.~8.4.)

-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 실시, 61개소에서 209건의 위반사항 적발

구 분	전체 (위반건수)	사법처리 (5개소) (위반건수)	과태료(61개소)	
			위반건수	과태료(천원)
합 계	209	19	190	383,923
원 청	115	15	100	226,473
하 청	94	4	90	157,450

2 주요 위반 내용

- 안전조치 위반행위의 주요 위반사항(19건)은
 - ① 안전난간·작업발판, 추락방호조치 부적정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사항 11건, ②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, 교반기 벨트 덮개 미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 위반사항 8건
 -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(190건)은
 - ① 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60건,
 - ②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* 설계변경 미반영 11건,
 - ③ 노사협의체 등 근로자가 참여하는 소통체계 구성·운영 미흡 12건,
 - ④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미확인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07건
- * 사고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해야 하며, 공법변경 시에는 계획에 반영하여 추가적인 위험 예방(산안법 제42조)

위반사항	합계	원청	하청
■ 안전조치 미준수			
1. 안전난간,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방지조치 등	11	9	2
2.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	0		
3. 기계·장비 안전조치	0		
4. 기타(낙하물 방지조치, 교반기 벨트 덮개 미설치 등)	8	6	2
■ 현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			
1. 안전교육(안전보건교육, 직무교육, 화학물질교육 등)	60	22	38
2. 유해위험방지계획서	11	11	0
3. 노사협의체,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산재 보고 등	12	12	0
4. 기타(위험성평가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)	107	55	52
총 계	209	115	94